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8 선고 2023가단90968(본소), 2023가단96454(반소) 판결
[공사대금 · 원상회복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정일배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찬

변론 종결2024. 7. 4.

판결 선고2024. 8.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2023. 10. 20.까지는 연 6%, 2023.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의 개요

원고가 수급인,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철제 보행로 구조물을 제작, 납품하였다. 그런데 위 구조물의 수량에 관하여 계약을 전후하여 상호 간 단위의 표시에 혼동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계약 수량 전부를 제작, 납품하였다고 나머지 대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계약 수량의 절반만 납품되었다며 기지급 대금 중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 15,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구조물의 형태와 제작납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23. 4. 17. 피고에게 C 태양광 보행로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구조물은 핸드레일, 파라펫, 앵글, 볼트, 소켓 등 구성부품을 조립한 철제 보행로로서, C의 콘크리트 통행로에 난간 형태로 부착하여 통행로를 넓힘과 동시에 보행자가 통행로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 사건 구조물은 좌우 대칭으로 된 형태이기 때문에 통행로의 좌측이든, 우측이든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이 사건 구조물의 수량은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t, ea, 반대칭 등 수량을 표시하는 용어가 모두 다르므로,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좌우 대칭 1쌍으로 된 구조물을 칭할 때는 편의상 '대칭 1쌍'이라 하고, 좌우 대칭 1쌍의 구조물 중

어느 한쪽의 구조물만을 칭할 때는 편의상 '비대칭 1개'라 한다. 결국 대칭 1쌍은 비대칭 2개인 셈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교섭단계의 견적의뢰와 견적서 제출

- 1) 피고는 2023. 3. 27. 이메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견적을 의뢰하였다. 첨부된 설계도면은 1장짜리로 4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평면도(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향의 모습)와 단면도(보행 방향으로 바라보고 수직으로 절단한 모습)는 대칭 1쌍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나머지 2개의 그림은 비대칭 1개를 평면도와 측면도로 각각 나타내고 세부 수치를 표시하였다. 설계도면의 하단에는 수량을 표시하는 의미로 '96EA'라고 기재되어 있다.
- 2) 원고는 2023. 3. 29. 이메일로 피고에게 1차 견적서를 보냈다. 1차 견적서에는 수량을 '96SET(반대칭)'이라고 표시하고 견적금액을 93,530,000원으로 하였다.
- 3) 피고는 2023. 4. 4. 이메일로 원고에게 수량을 줄이고 용융도금 및 배송비를 포함하여 견적을 다시 의뢰하였다. 피고가 이메일에 첨부한 설계도면의 그림은 종전 같이 4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구조물의 견고함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 부위에 보강재 강관을 추가하였고, 하단의 수량은 '85EA'로 표시하였다.
- 4) 원고는 2023. 4. 5. 이메일로 피고에게 2차 견적서를 보냈다. 피고가 요구한 용융도금과 배송비, 보강재를 반영하고, 1차 견적에 누락되었던 기계 가공비를 추가하여 견적금액을 115,55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차 견적서에 수량은 '85SET(반대칭)'으로 표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메일로 피고에게 견적금액을 106,940,000원으로 감축하여 다시 3차 견적서를 보내고, 이후 2023. 4. 11. 견적금액을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축하여 4차 견적서를 보냈다. 위 3, 4차 견적서에도 수량은 모두 '85SET(반대칭)'으로 표시하였다.

다. 시제품과 납품 경위

-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선금금 입금 후 샘플 1SET 납품, 샘플 1SET 설치 후 최종 납품일정 협의, 최종 납기일 2023. 6. 16., 샘플 포함 총 4회 이내로 전량 납품 진행완료'라고 기재하고, 공사금액은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수량과 금액은 위 4차 견적서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

2) 원고는 2023. 5. 18.경 샘플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샘플은 핸드레일, 파라펫, 앵글, 볼트, 소켓 등 구성부품을 조립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샘플 1SET'로 표시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작한 샘플은 비대칭 1개였다. 피고는 샘플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피고 측 담당자는 2023. 6. 12.경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제작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때까지 원고는 비대칭 28개를 제작하여 피고 측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진행보고서에는 '28set/ 3차 납품, 84set/ 일괄 납품'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 측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제작진행보고서에 서명하였다.

4) 원고는 2023년 6월에 1차 납품을 하였다. 납품은 원고가 구성부품을 현장에 운반해주고, 피고가 현장에서 구성부품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이때에 수량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우선 제작된 물량을 납품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3년 7월 초까지 비대칭 85개(=대칭 42.5쌍)를 납품하였다.

라. 대금 지급 및 납품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23. 4. 28. 원고에게 11,550,000원을, 샘플 제시 후 1차 납품 전인 2023. 5. 31. 원고에게 69,300,000원을 지급하여 계약금액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합계 80,85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위 납품 완료 후에 이 사건 계약의 수량에 관하여 원고의 비대칭 85개(=대칭 42.5쌍)라는 입장과 피고의 대칭 85쌍(=비대칭 170개)이라는 입장이 대립하였고, 상호 협의가 결렬되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3) 피고는 C과 협의하여 당초 보행로의 좌우에 설치하기로 한 이 사건 구조물을 한쪽에만 설치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수량 비대칭 85개를 모두 납품하였다고 계약금액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기 지급 80,8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6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본소로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수량 대칭 85쌍 중 절반인 대칭 42.5쌍만 납품되었다며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일부 해제,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기 지급 80,850,000원에서 계약금액의 절반 57,750,000원을 초과하는 23,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소로 청구하고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수량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딘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을 제8, 9, 13 내지 1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수량은 비대칭 85개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서 어떤 단위로는 총 납품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최종 4차 견적서에 따라 총 납품수량과 계약금액을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설사 4차 견적서에 의한 이 사건 계약의 성립에 이견이 있더라도, 피고의 견적의뢰는 청약의 유인이고, 원고의 견적서 제출은 청약에 해당하므로 상인 간의 거래에서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청약이 있으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4차 견적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수량은 4차 견적서의 표시내용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다. 4차 견적서에 수량은 '85SET(반대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구조물은 핸드레일, 파라펫, 앵글, 볼트, 소켓 등 구성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원고가 이를 조립하여

완성된 구조물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구성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원고는 구성부품을 조합한 형태라는 의미로 set라는 단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set가 좌우 대칭 1쌍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반대칭'이라는 표기를 부가하였음을 볼 때, '85SET(반대칭)'은 객관적인 문언상 비대칭 85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1차 납품 후 수량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때까지도 뚜렷하게 유지되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수량을 표시한 것은 설계도면에 나타난 '96EA' 또는 '85EA'가 유일하다. 여기서 EA는 each의 약자이므로 대칭 1쌍을 의미하는 표시로 부적합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비대칭 1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는 피고가 원고 외에 다른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것에도 드러난다. 즉, 피고는 2023. 3. 17. D에, 2023. 3. 27. E에 각각 견적을 의뢰하면서 96EA로 표시된 같은 설계도면을 첨부하였는데, D은 보행로 제작비 항목에 '96식'으로, E는 '좌우 각 1EA 96SET'로 표시한 견적서를 보내왔다. D은 이미 2022년 8월경부터 피고와 보행로 외에 태양광 구조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계도면의 96EA를 대칭 96쌍으로 이해하고 '96식'으로 수량을 표시한 반면, E는 96EA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에서 '좌우 각 1EA 96SET'로 표시한 것이다.1) 결국 피고가 설계도면으로 표시한 수량에 상대방의 혼동을 초래할 만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설계도면의 4개 그림 중 평면도와 단면도는 대칭 1쌍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의 깊게 살피거나 피고 측 담당자와 전화통화 등으로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혼동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E는 설계도면을 주의 깊게 살펴 혼동을 피하고 '좌우 각 1EA 96SET'로 수량을 명확하게 표시한 반면, 원고는 그러하지 못한 셈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의 나머지 2개 그림이 비대칭 1개를 평면도와 측면도로 하여 세부 규격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설계도면의 표시만으로 피고가 의도한 수량을 대칭 96쌍으로 이해하기는 여전히 곤란하다. 최소한 비대칭 1개의 평면도와 측면도에 ×2를 표시했더라도 이러한 혼동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외부적으로 표시한 수량(96EA)은 그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 객관적 문언상 비대칭 96개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계약에는 '샘플 1set'를 검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샘플 검수 시 원고가 가져온 비대칭 1개 샘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측 담당자가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제작 상황을 살펴볼 때도 비대칭 28개를 28set로 표시한 제작진행보고서에 별다른 이의 없이 확인 서명을 하였다. 피고가 1set를 대칭 1쌍으로 이해하였다면 사후적으로 드러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부터 납품까지 견적서 등에 나타난 원고의 의사표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단지 전체적인 계약금액에만 관심을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D과 E는 96EA 설계도면을 기초로 견적을 내고, 원고의 견적은 96EA에서 85EA로 변경되면서 견적금액이 달라졌으므로, 공통된 96EA를 기준으로 견적을 비교해보면, D의 견적금액은 146,289,946원이었다가 130,000,000원으로 변경되고, E의 견적금액은 178,464,000원이었다가 136,224,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의 견적금액(96EA에 대한 1차 견적서)은 93,530,000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의 1차 견적금액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그 수량의 표시나 규격 등을 다른 업체의 것과 비교해보지 않은 채, 다른 업체를 배제하고 원고와 교섭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본소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수량은 비대칭 85개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 수량을 모두 제작,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잔금으로 3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원고가 납품을 완료한 날 이후로 구하는 날)부터 2023. 10. 20.(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인 2023.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가 반소청구원인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일부 해지, 해제와 그 원상회복만을 구하므로, 이에 한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수량을 모두 제작, 납품한 이상 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창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set를 구성부품의 조합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반면, E는 좌우 1쌍의

의미로 set를 사용하였고, 이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set 표시를 좌우 1쌍으로 이해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이처럼 set도 수량을 표시하는 정확한 단위로 보기에 부적합하나, 적어도 원고가 견적서에 '반대칭'을 추가하였으므로, 청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견적서를 피고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은 원고가 설계도면상 대칭 1쌍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보다 더 크다.